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3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복기왕·문진석·채현일

김종민 · 정준호 · 김태선

염태영 • 노종면 • 장철민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 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생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
	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
	하여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
	한다.